[별표1]

징 계 양 정 기 준

고의 또는 과실여부 및 비위의 정도 / 비위의 유형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이지만 그 정도가 경한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하거나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경한 경우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경한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2. 직무상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 야기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나. 기 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무단이탈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 야기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고의 또는 과실여부 및 비위의 정도 / 비위의 유형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이지만 그 정도가 경한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하거나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경한 경우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경한 경우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금품등 수수(授受) 행위는 별표 1-1,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름)	파면	파면	정직	감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 사건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름)				
가. 성폭력(업무상위력에 의하거나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	파면-정직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1-1]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table>
<tr><th rowspan="2">비위 유형</th><th rowspan="2">수수 행위</th><th colspan="4">금 액</th></tr>
<tr><th>100만원미만</th><th>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h><th>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h><th>500만원 이상</th></tr>
<tr><td rowspan="2">직무관련자와의
금품등 수수는 있으나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경우</td><td>수 동</td><td>감봉·정직</td><td>정직·파면</td><td colspan="2">파 면</td></tr>
<tr><td>능 동</td><td>정 직</td><td>파 면</td><td colspan="2">파 면</td></tr>
<tr><td row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td><td>수 동</td><td>정 직</td><td>파 면</td><td colspan="2">파 면</td></tr>
<tr><td>능 동</td><td>정직·파면</td><td colspan="3">파 면</td></tr>
<tr><td row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td><td>수 동</td><td>정직·파면</td><td colspan="3">파 면</td></tr>
<tr><td>능 동</td><td colspan="4">파 면</td></tr>
</table>

[별표1-2]

법인카드 부정사용 징계양정기준

비위 행위	금 액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견 책	감 봉	정 직	파 면

[별표1-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음주운전 유형	양정기준
1. 면허정지(최초)	경 고
2. 면허취소(최초)	견 책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4. 면허정지 1회와 면허취소 1회 5. 면허정지 2회	견책-감봉
6.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발생 7. 면허정지 3회이상 8.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9. 면허취소(2회이상)	감봉-정직
10.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11.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1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정직-파면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비위행위자와 감독징계양정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1.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2.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3.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 **(고발대상)** 공사 임직원과 공사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행위 포함

□ **고발 기준**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2. 부당한 업무행위로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금품・향응수수, 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7.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8. 최근 3년이내에 금품・향응수수,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9.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